

## I. 반론보도청구사례

###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9.자 판결 (2005카기5171)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005년 7월 29일 주식회사 경인방송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심판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라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난 2005년 4월 18일 방송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신청인 법인이 여전히 존속중임에도 불구하고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표시하여 진실을 왜곡했고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이 “2004년 12월 31일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만인 2005년 4월 1일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등 신청인의 법인이 존속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2005년 1월 1일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으로서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반론보도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신청인의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5년 5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5서울중재159)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카기5171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인방송

인천 남구 학익동 587-46

대표이사 이 춘 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 옥 신, 양 종 관

피신청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대표자 사장 권 영 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변론종결 : 2005. 7. 15.

판결선고 : 2005. 7. 2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일백만(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 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1일 금 이백만(2,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방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7. 1.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인천, 경기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한 지상파 TV 채널 ‘iTV’, FM 라디오 채널 ‘iFM’을 각 운영하여 왔는데,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부터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이 예정되자, 2004. 12. 31.자로 폐업을 단행하여 ‘iTV’와 ‘iFM’의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에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나, 그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5. 4. 1.자로 영업을 재개하여 아직 방송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FM 라디오 채널인 ‘iFM’의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은 2005. 4. 18. 방송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미디어 이슈’ 코너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iTV’의 방송 중단 이후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 움직임을 보도하였는바, 그 보도 과정에서, ①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고(이하 ‘보도사실 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은 2004. 12. 31.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만인

2005. 4. 1.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2004. 12. 31.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보도사실 ②'라 한다).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비록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iTV'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신청인 법인은 여전히 존속 중에 있고, 디지털 TV 방송과 FM 라디오 방송은 아직 그 허가 기간이 남아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그 당부를 다투고 있는 만큼, 피신청인의 보도사실 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 결정은 'iTV'의 방송 중단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 수입원인 광고 영업을 중단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한 보도사실 ②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지 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도사실 ①의 내용은 신청인 법인이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상파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도사실 ②는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의 경위를 살펴 볼 때, 위장폐업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iTV'의 방송 중단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 방송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상 이 부분 보도는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을 결하였다고 다룬다.

### 나. 판 단

#### (1) 보도사실 ①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상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행자 및 토론자들이 그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최근 폐업을 선언했던 경인방송 법인이 라디오 방송을 재개하였다",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 "돌발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던 iTV 법인이 다시 사업재개를 했다"고 발언한 점, ㉡ 신청인은 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TV 채널인 'iTV' 이외에 FM 라디오 채널인 'iFM'도 함께 운영하여 왔던 점, ㉢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2004. 12. 21.

자 방송위원회 결정에 의해 신청인이 운영하던 방송 채널 중 하나인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차에 걸쳐 신청인 법인이 존속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자막의 내용이 신청인 법인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오인한데서 비롯된 보도사실 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 (2) 보도사실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사실 ②의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으로서 명예 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 경위를 살펴 볼 때,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상 위장 폐업인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기록상 소명되는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단순히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 (3) 반론보도문의 범위 등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보도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하고, 그 보도 방법은 TV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며,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 명령을 함께 발령하기로 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전 휴 재  
판사 이 효 제

### 〈별지 1〉 반론보도문

본 프로그램의 2005년 4월 18일 방송 내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이 있어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와 토론자는 작년 말 경인방송의 폐업은 경인방송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방송의 폐업결정은 방송위원회의 TV 재허가 추천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려진 조치일 뿐 위장 폐업을 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경인방송은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직원, 주주,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들과 시민들이 현재 허가기간이 남은 FM 방송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기를 강력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별지 2〉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23.자 판결 (2005카합172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23일 경상남도 합천군과 합천군수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KBS가 지난 2005년 5월 28일 방송한 「KBS스페셜- '지방자치 10년 기획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어 군수로 당선된 뒤 건설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군청 직원들로부터도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방송이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적법성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할 것이고 평균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방송 내용을 단순히 군수의 부정이나 부당한 직무행태의 예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그가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합천군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천군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천군의 명예도 직접적으로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방송 내용 자체의 진실 여부나 국민의 알권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송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5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5서울중재220)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카합1724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1. 심 ○ ○

2. 경상남도 합천군

대표자 군수 심 ○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2005. 8. 11.

**판결선고** : 2005. 8. 2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화면 중앙 상단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방송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방송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들이, 2/3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화면 상단에는 두줄로 '합천군 및 심OO 합천군수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신청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신청인 경상남도 합천군(다음부터 신청인 합천군이라고 한다)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을 포함 일정한 범위 내의 관할 행정업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신청인 심OO는 그 대표자인 군수이며, 피신청인은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등의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5. 5. 28. 2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다시 되돌아본다는 취지 아래 그 1 채널을 통하여 '지방자치 10년 기획 나는 왕(王)이로소이다'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내용의 방송(다음부터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중 신청인

들과 관련하여 방송된 부분은 대략 '신청인 심○○는 ①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어 군수로 당선된 뒤 ② 선거자금을 건넨 해당 건설업자들에게 공사업체선정시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③ 군청 직원들로부터도 승진 등과 연관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갑1호증, 소을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

살피건대, 공직수행의 투명성과 순수성은 일반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한편, 공직자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해 있는 행정관청 내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직접 언급된 신청인 심○○는 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뇌물수수와 특혜제공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방송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의심받는 피해를 겪었다 하겠고, 신청인 합천군 역시 이러한 방송 내용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대표자가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치업무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음으로써 공신력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방송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 심○○에 대한 여러 비리의혹을 그 내용으로 삼은 것일 뿐이므로 신청인 합천군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신청인 심○○와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데다가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쳐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은 피신청인과 같은 언론기관의 사명이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이 그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바 없다는 등 신청인들이 반론보도로 구하는 내용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록 이 사건 방송이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적법성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평균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단순히 신청인 심○○의 부정이나 부당한 직무 행태의 예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그가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신청인 합천군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청인 합천군 자체에 대한 왜곡될 인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 합천군의 명예도 직접적으로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방송 내용 자체의 진실 여부나 국민의 알권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심○○와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송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법원이 뒤에서 인정하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및 간접강제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의 기획 취지와 공정성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들의 법익과 피해의 정도, 신청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신청문을 참작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그 방송방법은 통상적인 예에 맞추어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주문 1항의 의무행을 강제함에 있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2항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만 오

판사 이 철 원

판사 김 선 일

#### 〈별지 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은 지난 5월 28일 방영된 ‘지방자치 10년 기획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프로그램에서 경남 합천군 심○○ 군수가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대가로 많은 수의 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또한 심○○ 군수가 군청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인사를 시행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및

십〇〇 군수의 반론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십〇〇 군수는 지난 2002년 합천군수 선거 당시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거나 그들에게 군수로 당선되면 그 대가를 보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십〇〇 군수는 어느 군청 공무원으로부터도 승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해외출장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합천군에서는 관내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해 왔는데, 입찰은 공개경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서 수해복구 공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기하여 이루어져 어떠한 불법이나 부정도 없었으며, 특히 십〇〇 군수가 선거자금을 받은 대가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합천군 가현배수장 수해복구공사와 황강수중보 설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한 사업이어서 합천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합천군 하금제 수해복구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합천군 내 군도 15호선 확포장도로공사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코자 부득이 수해 복구공사와 병행 시행한 것으로서 향후 하천이 범람할 위험은 없고, 관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도로 축조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퇴적 및 불규칙한 하상정비를 위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반론보도청구인 경남 합천군·합천군수 십 〇 〇

〈별지 2〉 반론보도신청문생략 - 편집자주



**특허심사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자 판결 (2005카기950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006년 1월 20일 특허청이 법률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독자로서는 특허심사기록을 청사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규정이 특허청 직원 중에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는 직원이 많아 이러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마치 특허심사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법률신문이 2005년 8월 8일 ‘월요법창’ 『재판기록 청사의 반출』 제하의 기사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기록 반출 금지 규정이 심사기록을 수사기관에 가져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2005년 8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05서울조정41)을 하였고 조정결과 담당중재부가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 법원에 자동으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카기9504 반론보도

신 청 인 : 특허청

대표자 특허청장 김 중 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 수 원

피신청인 :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대표이사 이 영 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 승 국

변론종결 : 2006. 1. 6.

판결선고 : 2006. 1. 2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률신문> 4면 월요법창 칼럼의 위치와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의 월요법창 칼럼 위치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인 「재판기록의 청사의 반출」 제목과 같은 크기

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각 1회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그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법률신문> 4면 월요법창 칼럼의 위치와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의 월요법창 칼럼 위치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인 「재판기록의 청사의 반출」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각 1회 게재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특허청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고, 피신청인은 주2회 ‘법률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2005. 8. 8.자 법률신문 및 같은 날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의 ‘월요법창’이라는 칼럼에 “...특허청에서는 직원이 특허심사기록을 청사 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내규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뜻밖이다. 특허심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이 ‘특허청 직원이 뇌물 받고 특허심사를 잘못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특허청 직원에게 ‘심사기록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내규를 두어 내규를 핑계로 심사기록을 수사기관에 가져가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한다...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한다고 특허심사관이 실제로 출석하여 심사를 잘했니 못했니 하는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이라는 내용의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단

위 기사내용에 의하면, 일반 독자로서는 특허심사기록을 청사 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규정이 특허청 직원 중에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는 직원이 많아 이러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마치 특허심사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수

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 보도 내용에 대립되는 신청인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의 구성 및 보도내용과 보도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2 기재 반론보도 요구문은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별지 1〉 반론보도문

특허청은 법률신문 2005년 8월 8일자 제4면의 월요법창에 실린 “재판기록의 청사의 반출” 제하의 기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위 기사는 특허청이 ‘직원이 특허청심사기록을 청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내규를 둔 이유에 관하여, 특허심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특허청 직원이 뇌물 받고 특허심사를 잘못 하였다’고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이 특허청 직원에게 ‘심사기록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내규를 두어 내규를 핑계로 심사기록을 수사기관에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허청 직원에 대해 특허심사와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하였음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한편 심사기록의 청사의 반출금지규정(특허법 제217조 제1항)은 심사기록을 수사기관에 가져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사기록의 원본의 분실과 발명의 부당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사의 적법성 여부는 특허심사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문답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다.

반론보도청구인 특허청장

〈별지 2, 3〉 반론보도요구문, 기사생략 - 편집자주



**기사 내용이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9. 28.자 판결 (2001카기11669)

서울고등법원 2002. 7. 11.자 판결 (2001나67203)

대 법 원 2006. 2. 10.자 판결 (2002다49040)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2006년 2월 10일 국정홍보처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동아일보가 2001년 7월 4일과 5일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 1, 2심에서 승소하였고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재판부는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보도는 정부 일각 등에서 이와 같은 반응 내지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신청인의 거듭된 성명 발표가 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보도의 핵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 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일체의 보도를 편향 왜곡보도, 국정수행에 대한 방해행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와 사설로 인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의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7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57)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1심 판결문

사 건 : 2001카기11669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대표자 처장 박 준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전 태 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론종결 : 2001. 9. 28.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

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별지 2 기재 기사의 고딕체 기사 내용 요약(‘사흘에 한번꼴 신문보도 공격’ 등)과 같은 서체와 크기로, 나머지는 본문 활자와 같은 서체와 크기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금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 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달한 국무회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의 ‘퀘변’』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동아일보 2001. 7. 4.자 A 4면 기사와 A 5면 사설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1. 7. 4.자 A 4면에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의 잦은 대언론 비판성명과 그 내용이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기사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를 게재하면서 ‘사흘에 한번꼴 언론보도 공격’, “총대메고 나섰나” 비난’ 등의 기사 내용 요약을 고딕체로 게재하고, 국정홍보처장이 2001. 6. 23.부터 2001. 7. 2.까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4번이나 발표했으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국정홍보처장이 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섰나’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고, 같은 날짜 신문의 A 5면에는 『오 국정홍보처장의 ‘퀘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보도를 놓고 국정홍보처

오홍근 처장의 이상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피해당사자인 언론사가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국정홍보처장이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사실 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의 2001. 7. 4.자 위 기사와 사실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납탈하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일체의 보도를 편향 왜곡보도, 국정수행에 대한 방해행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와 사실로 인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위 기사와 사실의 길이, 그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사실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5, 7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합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위 기사와 사실이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 2. 동아일보 2001. 7. 5.자 4면 기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아일보 2001. 7. 5.자 4면에 『단한 국무회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별지 3 기재 기사에 대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같은 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단한 국무회의』라는 제목의 위 기사는,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했던 토론과 현장 중심의 '열린 국무회의'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중심의 '단한 국무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기사 중에 국정홍보처가 언급된 바가 없고, 국무회의의 개최가 국정홍보처의 소관 업무라고 볼 만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하여 국정홍보처가 당해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신청인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기사는 신청인의 그러한 소관 업무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닐 뿐 아니라, 위 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정부 내의 다른 기관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보기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10. 19.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 〈별지 1〉 반론보도문

- 제 목 : 국정홍보처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국정홍보처는 2001. 7. 4.자 동아일보 A 4면에 게재된 기사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과 A 5면에 게재된 사설 『오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동아일보는 위 기사와 사설에서 오홍근 당시 국정홍보처장이 정부 성명을 남발하고,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왜곡 편향되고 국정 수행을 방해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국정홍보처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장 본연의 업무이며, 발표 회수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오홍근 당시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관하여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보도사례를 적시하여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당한 언론의 보도나 비판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

### 〈별지 2~6〉 기사내용,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주

## 2심 판결문

사 건 : 2001나67203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표자 처장 박 준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피신청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론종결 : 2002. 7. 11.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0. 19. 선고 2001카기11669 판결

주 문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단한 국무회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재 기사와 같은 활자 및 서체의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

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7,792,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의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아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001. 7. 4.자 A 4면에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의 잦은 대언론 비판성명과 그 내용이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흘에 한번꼴 언론보도 공격', '한나라 "총대빼고 나섰나" 비난' 등의 기사내용 요약을 고딕체로 기재하고, 국정홍보처장이 2001. 6. 23.부터 2001. 7. 2.까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공식 성명을 4번이나 발표했으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국정홍보처장이 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총대를 빼고 나서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1 보도'라 한다, 기사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하고, 같은 날짜 신문의 A 5면에는 『오 국정홍보처장의 '퀘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보도를 놓고 국정홍보처 오홍근 처장의 이상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피해당사자인 언론사가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국정홍보처장이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퀘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이하 '이 사건 2 보도'라 한다, 사실 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하였고, 동아일보 2001. 7. 5.자 4면에 『'달힌 국무회의'』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

부 출범과 함께 표방했던 토론과 현장 중심의 ‘열린 국무회의’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중심의 ‘닫힌 국무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장관들 난상토론 사라지고 대통령지시 받아적기 급급’, ‘세종로·과천청사 각의 줄고’, ‘청와대 회의만 점점 늘어’, ‘DJ 발언도 갈수록 길어져’, ‘현장·민심 챙기기 퇴색’ 등의 기사내용 요약을 고딕체로 기재하고,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세종로 중앙청사 및 과천청사에도 자주 나가 국무회의를 갖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해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나 행사만으로는 참된 민심과 여론을 읽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3 보도’라 한다, 기사 전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하였다.

####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2001. 7. 18.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같은 달 30.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규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 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다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반론보도심판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1, 2 보도에 대한 판단

##### (1) 반론보도청구의 당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의 이 사건 1, 2 보도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일체의 보도물 편향 왜곡보도, 국정수행에 대한 방해행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와 사실로 인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1, 2 보도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이 문제의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이를 충실하게 보도하여왔고, 이 사건 1, 2 보도에서도 충분한 반론을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감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이 발표한 성명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보도의 중간 부분에 '오처장측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정부의 적법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매도하고 있어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뜻이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의 성명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각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반

론이 소급하여 보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가 기관이나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관이나 개인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큰 것이므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이 사건 1, 2 보도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위 각 보도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신청인에게 위 각 보도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방법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이 사건 1, 2 보도와 같이, 그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1, 2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5, 7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합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 방법은 이 사건 1, 2 보도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 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별지 2 기재 기사의 고딕체 기사내용 요약(‘사흘에 한번꼴 신문보도 공격’ 등)과 같은 서체와 크기로, 나머지는 본문활자와 같은 서체와 크기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 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 (3) 간접강제

한편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 3 보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3 보도로 인하여 정부가 피해를 받았으므로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신청인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그 피해를 받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같은 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단한 국무회의』라는 제목의 위 기사는,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했던 토론과 현장 중심의 '열린 국무회의'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중심의 '단한 국무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기사 중에 국정홍보처가 언급된 바가 없고, 국무회의의 개최가 국정홍보처의 소관 업무라고 볼 만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하여 국정홍보처가 당해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신청인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하여도, 위 기사는 신청인의 그러한 소관 업무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닐 뿐 아니라, 위 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정부 내의 다른 기관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5.

재판장 판사 이 종 찬  
판사 박 희 승  
판사 정 효 채

〈별지 1~8〉 기사내용,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3심 판결문

사 건 : 2002다49040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대표자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상고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판 결 선 고 : 2006. 2. 10.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기간도와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반론보도청구권 제도 자체와 반론보도청구권 사건에 대하여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이 시작되기 전인 2005. 7. 27.까지 유효하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하 '정간법' 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19조 제4항은 위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 제도와 그 청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규정의 합헌성에 대하여는,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합헌성을 천명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95헌바25 결정), 제도의 본질은 정간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간법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垂範者)이지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이 본래 우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연원한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정하게 대응한 방어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국가 등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관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의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간법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간법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앞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관이나 단체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법상의 단체 등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는 다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인 언론기관들과의 관계도 앞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바와 같고, 상대방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가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론보도청구제도의 본질인 인격권 보장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당사자능력을 부여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기관 또는 단체와 별개의 자연인인 그들의 대표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

행하여 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참조),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原報道,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보도를 ‘원보도’라 한다)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아일보의 이 사건 1, 2 보도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일체의 보도를 편향 왜곡보도, 국정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와 사설로 인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원심판시의 반론 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1. 6. 23.부터 같은 해 7. 2.까지 10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가 자신들의 세무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향, 왜곡 보도이고, 정부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그 중 2001. 6. 28.자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들과 관련된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다음 2001. 7. 4.자로 이 사건 1보도를 게재하고, 같은 날짜에 사설로서 이 사건 2보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1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실 및 성명 내용의 요지를 보도한 다음, 이러한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한 데 이어서, ‘사흘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 공격’, ‘정부 일각서도 문제점 지적’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본문기사 내용으로 ‘정부 일각’ 및 ‘한 관계자’의 반응 내지 지적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6월 28일자 성명에서 해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정부성명이 이처럼 남발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2보도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이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보도는 정부 일각 등에서 위와 같은 반응 내지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신청인의 거듭된 성명 발표가 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보도의 본질적 핵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 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 6. 23.부터 7. 2.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 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강 국  
 대법관 손 지 열  
 주 심 대법관 김 용 담  
 대법관 박 시 환

□